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정당업자 범위 확대〉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76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정당업자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라목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5. 9. 8.

다.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Ⅲ. 검토의견

1. 부정당업자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9호라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부정당업자 범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9호라목 신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 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국가계약법」¹⁾은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기 위하여 불성실, 불공정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업체를 정부조달절차에서 배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이 금지됨.

최근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하여 제작되고 있는 ITX-마음 열차의 경우 2025년 7월 기준 계약 물량 358량 중 납품 완료 건수가 116량(32.4%)에 불과하고 242량이 납품 지연되고 있어 공공 이익을 저해하고 있음.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ITX-마음 납품 완료 현황(2025.7. 기준)]

구분	계약일	납기일	계약물량	납품완료	납품완료 비율
1차	2018.12.31.	2021.12.	150량	104량	69.3%
2차	2019.11.20.	2022.11.	208량	12량	5.8%
합계			358량	116량	32.4%

자료: 한국철도공사, 정준호 의원실 보도자료

「국가계약법」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²⁾,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상금률(0.05%~0.25%)×지체일수] 부과³⁾, 계약해제·해지 등 수단을 통하여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여, 고의적 납품 지연에 대한 공공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계약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존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 계약해제·해지 등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존 제재 체계와 중복 우려가 있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개정안과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①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적격심사에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자, 공사이행보증서 미제출자 등을 제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계약 이행을 지연한 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②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계약 이행을 완수한 이상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라 위임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이 없는 경우 법적 분쟁 해소 및 계약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법률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u>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u>	6개월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1개월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3개월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개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문 의 처

02)6788-5150